

소 장

원 고 이기찬 외 61명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신명근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성춘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5 로뎀에비뉴빌딩 303호

전화 : 02) 853-7831 팩스 : 02) 853-783

피 고 흠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성개발빌딩

대표이사 도 성 환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등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서 피고의 약관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를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기재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홈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고(갑 제1호증 : 홈플러스 회원 자격 자료 참조), 피고는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갑 제2호증 : 홈플러스 등기부등본 참조).

2.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 체결, 구매계약의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용역의 이행, 이용자 문의 서비스, 기타 이벤트 서비스 등의 제공¹⁾을 명분으로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전국 각지에 소재한 홈플러스 각 매장에서 회원가입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받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1) 홈플러스 홈페이지 홈플러스 이용 약관 제5조 서비스의 종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²⁾.

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규정³⁾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 한편, 피고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게 되지만, 추후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는 2011. 12.부터 2014. 8.까지 개인정보를 매도하였는 바, 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해당 규정은 위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이하 생략)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9조(손해배상책임)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A 보험사(약 765만건)와 B 보험사(약 929만건)을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씩 약 83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보도자료 참조).

라.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액

가. 손해액의 산정 기준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

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나. 구체적 기준

(1) 피고의 고의·과실의 정도

국민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터넷 금융사기, 휴대폰 문자사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몹시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이 개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USB에 담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국민들은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제공하였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회원탈퇴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대규모 유통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등 약간의 이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수집한 개인정보 약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 제공한 후 1건당 2,800원씩 약 83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취득한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회원들의 개인정보 판매행위로 약 231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고의·과실 정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미끼를 제공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서 그 동기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동기와 원인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3) 가해자의 재산상태

삼일회계법인이 2014. 5. 작성한 감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2014. 2. 28. 당시 자산총계는 약 6조 5천억원이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매출 총이익이 2,465,343,791,560원입니다.

(4) 사고 후의 태도

피고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개인정보 무단 판매 행위 등이 발각 되어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3자에 제공한 현황 정보를 삭제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민감성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2015. 1. 30.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이 선별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동의를 위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후 동의를 해준 회원은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까봐 개인정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최근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제3자의 해킹에 의한 것이든, 내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든 간에 1회성 또는 단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임에 반하여, 피고의 행위는 2011. 11.부터 2014. 8.경 까지 약 만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이고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4)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신용카드사들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게 되자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제32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과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본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 삼성생명 사건

삼성생명이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의 물색 및 그에 대한 효율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적극적인 영업목적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신용정보를 보험모집인들에게 추출·가공하여 제공한 사건(서울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2가단89541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에 관한 신뢰가 깨어지고 더 이상 경제거래에 따른 사생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개인

개인정보 사건을 계기로 2014. 5. 28.개정되어 6개월 후인 2011. 11. 18.부터 시행되므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의 신용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허용된 신용정보업자등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신용정보에 의한 통제를 받는 영리행위의 객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신용정보의 중요성, 피고의 위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약 83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금 100만원 및 위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5. 4. 2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 경 수

신 명 근

변 호 사 조 형 수

변 호 사 성 춘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